

회계사 중급회계연습 I 17판1쇄 정오표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
74	〈경우 4〉	계약에 따라 고객이 타 회사의 설치용역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〈경우 3〉과 동일하다.	계약에 따라 고객이 을회사의 설치용역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〈경우 3〉과 동일하다.									
88	해답 물음 2 (2)	(2) 575개×₩90－75개×₩100(가격할인분)=₩44,250	(2) 575개×₩90－75개×₩100(1분기 수익)=₩44,250									
95	〈자료 1〉	계약에는 갑회사가 고객에게 환불되지 않는 ₩15,00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, 이 금액은 고객이 갑회사의 제품을 선반에 진열하는 데 필요한 변경에 대한 보상이다.	계약에는 (주)대한이 고객에게 환불되지 않는 ₩15,000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, 이 금액은 고객이 (주)대한의 제품을 선반에 진열하는 데 필요한 변경에 대한 보상이다.									
114	해답 물음 2 3.	3. 전문가 의견은 고객에게 특정된 사실 및 상황에 관련되기 때문에 을회사에 대체 용도가 있는 자산을 창출하지 못한다.	3. 전문가 의견은 고객에게 특정된 사실 및 상황에 관련되기 때문에 (주)민국에 대체 용도가 있는 자산을 창출하지 못한다.									
134	해답 물음 2 (1)	(1) ₩480－80=₩400, 20×1년 4월 1일에 발생한 거래가격의 변동 ₩80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에서 차감한다[1115:88].	(1) ₩480－80=₩400, 20×2년 4월 1일에 발생한 거래가격의 변동 ₩80은 거래가격이 변동되는 기간에 수익에서 차감한다[1115:88].									
153	해답 물음 1	〈계산근거〉	〈상품권 판매〉									
	해답 물음 2	20×2. (차) 계 약 부 채 27,000 (대) 채 무 면 제 이 익 27,000	20×2.12.31 (차) 계 약 부 채 27,000 (대) 채 무 면 제 이 익 27,000									
181	물음 2 〈자료 2〉	3. 추가	3. 제품 C와 제품 D • (주)민국은 20×1년 6월 1일 제품 C와 제품 D를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다. • 제품 C는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에게 이전하고, 제품 D는 20×2년 2월 1일에 이전한다. • 고객이 약속한 대가는 고정대가 ₩300,000과 ₩50,000으로 추정되는 변동대가를 포함하며, 대금은 제품 D가 이전되는 시점에 받기로 하였다. 변동대가 추정액은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이 고려된 후의 금액이며, 변동대가는 제품 C와 제품 D에 모두 배분한다. • (주)민국은 20×1년 12월 31일 변동대가 추정치 및 추정치의 제약을 재검토한 결과 변동대가를 ₩60,000으로 추정하였다. • 제품 C와 제품 D의 날짜별 개별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.<table><tr><td>구 분</td><td>20×1년 6월 1일</td><td>20×1년 12월 31일</td></tr><tr><td>제품 C</td><td>₩300,000</td><td>₩280,000</td></tr><tr><td>제품 D</td><td>100,000</td><td>120,000</td></tr></table>	구 분	20×1년 6월 1일	20×1년 12월 31일	제품 C	₩300,000	₩280,000	제품 D	100,000	120,000
구 분	20×1년 6월 1일	20×1년 12월 31일										
제품 C	₩300,000	₩280,000										
제품 D	100,000	120,000										

